

주세법 법률 일부개정안 - 탁주와 맥주 세율의 탄력적 조정 -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 안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제19201호, 2022.12.31. 일부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세법 개정

1. 개정이유

- 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 당 41,700원 나. (생략)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text{세율} = \text{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times [1 + \text{가격변동지수} (\text{「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나. (현행과 같음)

<p>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 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p> <p>3~4. (생략)</p> <p>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세율} = \text{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times [1 + \text{「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div> <p>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p>	<p>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p> <p>3~4.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p>
---	--

*** 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1월 중순 발표할 예정

3. 시행일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
-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주세법 일부개정안

| Contact



소은혜 관세사

T 02.6011.3012
E yhso@esein.co.kr



강민아 컨설턴트

T 070.4353.1555
E maka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